제24-4차(긴급4차 통합) 규칙개정위원회 회의록

2024년도 4차(긴급4차 통합) 규칙개정위원회의 심의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.

▢ 회의일시 : 2024. 9. 20.(금) 10:00

▢ 회의장소 : 스파크플러스 삼성2호점 406호

▢ 심의결과

1. 규칙개정안건

안건수	원안 가결	수정 가결	심의 보류	부결
11건	6건	-	4건	1건

2. 일반의결안건 · 보고안건

일반의결안건					보고안건	
안건수	원안 가결	수정 가결	심의 보류	부 결	안건수	원안 접수
1건	1건	-	-	-	1건	1건

붙 임 : 1.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
2. 일반의결·보고사항 결과

2024. 9. 20.

위원장	한국전력거래소	정동희
위 원	한국전력거래소	심현보
	산업통상자원부	김남혁
	단국대학교	조홍종 (불 참)
	건국대학교	노재형
	법무법인 광장	조영재
	한국전력공사	오흥복 (대리참석)
	한국중부발전	김광일
	포스코인터내셔널	김권종
간 사	한국전력거래소	옥기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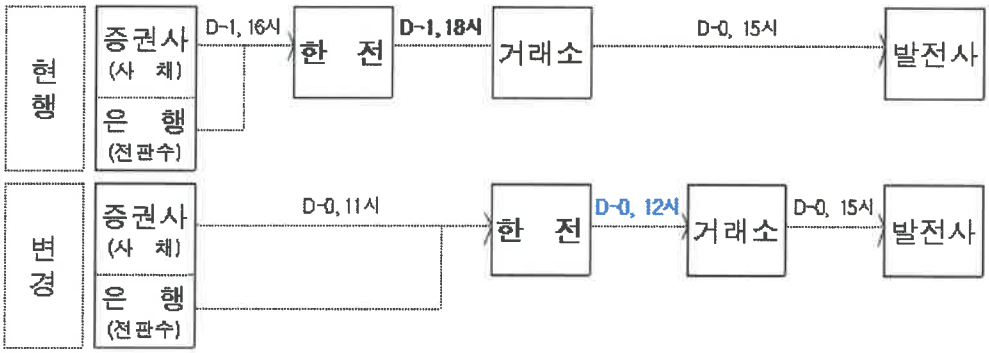
김한솔/20241008154514

06772037641728369926

【붙임 1】

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

안건명 : 전력거래대금 결제기한 조정을 위한 규칙개정(안)

4차(통합) 규칙개정위원회	제안번호 : 제2024-4-1호
개최일시	2024년 9월 20일 10:00
제 안 자	한국전력공사
제안내용	□ (기존) 차수별 결제일 D-1일 15시 → **(개정) 차수별 결제일 D-0일 12시** ☞ 제4.3.2조(거래대금 결제) 제2항 **<전력구입비 결제기한 변경>** 
주요 토의내용	□ **회의결과 : 심의보류** ○ **참석위원 전원이 본 규칙개정 안건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하여 심의보류 하는 데 동의함** – (보류 사유)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, 책임 소재, 신뢰성 담보 수단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바, 전력거래소–한전–전문가(규칙개정위원회 위원) 등의 검토가 선행될 필요

심의 결과 : 심의보류

2024년 9월 20일

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정 동 희 (직인)

김한솔/20241008154514
0677203764172836992

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

안건명 : 전력거래대금 결제일정 조정을 위한 규칙개정(안)

4차(통합) 규칙개정위원회	제안번호 : 제2024-4-2호
개최일시	2024년 9월 20일 10:00
제 안 자	한국전력공사

제안내용

□ 결제일 변경 : (기존) 매 4, 12, 22, 25일 → **(개정) 매 8, 21, 28일**

☞ [별표 2] Ⅵ, [별표 8] 및 [별표 26] Ⅴ

지급일자(기존)	4일	12일	22일	25일
	⇩	⇩		⇩
지급일자(개정)	8일	21일		28일

※ 휴일의 경우 다음 영업일

주요 토의내용

□ **회의결과 : 심의보류**

○ **참석위원 전원이 본 규칙개정 안건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하여 심의보류 하는 데 동의함**

– (보류 사유) 정부 및 가스공사 등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는바, 해당 협의 이후 전력거래소–한전–발전사업자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순차적인 논의를 거쳐 규칙 개정 필요

심의 결과 : 심의보류

2024년 9월 20일

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정 동 희

김한솔/20241008154514

0677203764172836992

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

안건명 : 제주 시범사업 급전가능집합전력자원 ESS의 공급가능용량 정산에 대한 규칙개정(안)

4차(통합) 규칙개정위원회	제안번호 : 제2024-4-3호
개최일시	2024년 9월 20일 10:00
제 안 자	LG에너지솔루션

제안내용

☐ 제주 시범사업 급전가능 집합전력자원에 속한 비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의 실효용량은 **급전가능재생에너지자원 실효용량에서 분리하여 용량정산금 지급 대상 용량을 결정** ☞ [별표33] 급전가능재생에너지자원에 대한 정산

기 존	개 정
급전가능재생에너지자원에 대한 정산은 발전사업자 및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가 입찰시 제시한 공급가능용량과 실효용량, 계량전력량 및 급전지시 출력 등을 반영하여 정산한다. <신 설>	<좌 동> 단, 제주 시범사업 급전가능집합전력자원에 속한 비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는 실효용량을 분리하여 합산한다.
$SET_POINT_{i,t} = RA_{i,t}$ 인 경우, $TPCP_{i,t} = Min(A_{i,t}, RA_{i,t}, MGO_{i,t}, EA_i) \times RCP_i \times 1{,}000$ $SET_POINT_{i,t} < RA_{i,t}$ 인 경우, $TPCP_{i,t} = Min(A_{i,t}, RA_{i,t}, EA_i) \times RCP_i \times 1{,}000$	$SET_POINT_{i,t} = RA_{i,t}$ 인 경우, $TPCP_{i,t} = \{Min(A_{i,t}, RA_{i,t}, MGO_{i,t} - MGO_ESS_{i,t}, EA_i - ESS_EA_i) + Min(ESS_EA_i, ESS_MAX_{i,t})\} \times RCP_i \times 1{,}000$ $SET_POINT_{i,t} < RA_{i,t}$ 인 경우, $TPCP_{i,t} = \{Min(A_{i,t}, RA_{i,t}, EA_i - ESS_EA_i) + Min(ESS_EA_i, ESS_MAX_{i,t})\} \times RCP_i \times 1{,}000$

주요 토의내용

☐ **회의결과 : 부결**

○ **참석위원 전원이 본 규칙개정 안건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하여 부결하는 데 동의함**

- (부결 사유) 제안 내용과 같은 일부 정산식의 개정을 지속해 나가기보다는 VPP 정산 전반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, 향후 제주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VPP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

심의 결과 : 부결

2024년 9월 20일

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정 동 희 (직인생략)

김한솔/20241008154514

0677203764172836992

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

안건명 : 하향예비력 기준 보완에 관한 규칙개정(안)

4차(통합) 규칙개정위원회	제안번호 : 제2024-4-4호
개최일시	2024년 9월 20일 10:00
제 안 자	전력거래소

제안내용

1 (조치절차) 하루전 계획 및 실시간 운영 단계별 조치절차 명확화

☞ 제5.1.9조, [별표9] 7.7.2, [별표11] 7.5.3, [별표12] 7.2.6

【 하루전 및 실시간 조치절차 】

세부항목		(D-1) 신뢰도 발전계획	(D-Day) 실시간 운영
판단 기준	기존	하향예비력 2,000MW & 하향주파수예비력 1,200MW 미만	
	개정	하향예비력 2,000MW 미만	하향주파수예비력 1,200MW 미만
조치 절차	기존	- 수요반응자원 증대 - 발전기 및 전기저장장치 출력감발 및 정지 - 송·변전 및 배전설비 조작 시행	
	개정	❶ 중앙발전기 출력조정 및 정지 - 필수운전 발전기 지정, 열제약 발전기 및 시운전 일정 조정, 플러스 DR 시행 등 ❷ ❶의 조치후 하향예비력 부족시 비중앙 출력제어 계획수립	- 전일 계획된 비중앙 출력제어 시행 - 전일 비중앙 출력제어 계획에 미포함된 실시간 출력제어 가능 자원, 송전사업자 전기저장장치 활용 등

2 (경보발령) 하향예비력 비상 시 경보발령 체계 개선 ☞ [별표12] 7.2.5

【 비상 시 경보발령 절차 】

세부항목	기 존	개 정	비 고(상향예비력)
발령권자	전력거래소 이사장	전력계통 본부장	전력거래소 이사장
산업부 보고	산업부 보고 후 발령	조치후 통보	산업부 보고 후 발령
세부조건	-	주파수 유지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	-
발령대상	조치 대상으로 한정 (발전·수요관리·송배전사업자)		국민 대상 (발전·수요관리·송배전사업자 포함)

주요 토의내용

☐ 회의결과 : 원안가결

○ 참석위원 전원이 본 규칙개정 안건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하여 원안가결하는 데 동의함

심의 결과 : 원안가결

2024년 9월 20일

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정 동 희 (직인생략)

김한솔/20241008154514

0677203764172836992

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

안건명 : 하향주파수예비력 계획량에 따른 전력시장 가격결정자격 기준에 대한 규칙개정(안)

4차(통합) 규칙개정위원회	제안번호 : 제2024-4-5호
개최일시	2024년 9월 20일 10:00
제 안 자	전력거래소

제안내용

□ 발전기들의 하향주파수예비력 계획량 합계가 예비력 확보기준량보다 크면, **발전기의 발전계획량이 최소출력보다 클 경우 가격결정 자격 부여**

기 존	개 정
발전기가 최소발전용량(MG_i)에 하향주파수예비력 계획량($DASRDR_{i,t}$)을 더한 값 이하로 발전계획($DAOS_{i,t}$)된 경우, 가격결정에서 제외 $DAOS_{i,t} \le MG_i + DASRDR_{i,t}$ ($DASRDR_{i,t}$ = Min ($DAOS_{i,t}$-MG_i, 감발률×10)) <신 설>	발전기가 최소발전용량(MG_i)에 하향주파수예비력 계획량($DASRDR_{i,t}$)을 더한 값 이하로 발전계획($DAOS_{i,t}$)된 경우, 가격결정에서 제외 $DAOS_{i,t} \le MG_i + DASRDR_{i,t}$ ($DASRDR_{i,t}$ = Min ($DAOS_{i,t}$-MG_i, 감발률×10)) 단 발전기들의 하향주파수예비력 계획량 합계가 별표3 제1.3.5의 하향주파수예비력 확보 기준량보다 크다면 최소발전용량(MG_i) 이하로 발전계획($DAOS_{i,t}$)된 경우, 가격결정에서 제외 $DAOS_{i,t} \le MG_i$

주요 토의내용

□ **회의결과 : 원안가결**

○ **참석위원 전원이 본 규칙개정 안건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하여 원안가결하는 데 동의함**

심의 결과 : 원안가결

2024년 9월 20일

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정 동 희 (직인생략)

김한솔/20241008154514

0677203764172836992

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

안건명 : 전력설비 휴전에 따른 송전제약의 하루전발전계획 반영을 위한 규칙개정(안)

4차(통합) 규칙개정위원회	제안번호 : 제2024-4-6호
개최일시	2024년 9월 20일 10:00
제 안 자	전력거래소

제안내용

☐ **긴급휴전을 제외한 10일 이상 전력설비 휴전에 의한 송전제약은 하루전발전계획 송전제약검토서에 포함**

☞ [별표9] 제7.1.6조(송전제약의 검토)

기 존	개 정
전력설비의 휴전, 고장 등 적용시 간대가 유동적인 송전제약은 하루전 발전계획 송전제약검토서에 미포함 <신 설>	전력설비의 휴전, 고장 등 적용시 간대가 유동적인 송전제약은 하루전 발전계획 송전제약검토서에 미포함 **단, 긴급휴전을 제외한 10일 이상 전력설비 휴전에 의한 송전제약은 하루전발전계획 송전제약검토서에 포함한다.**

주요 토의내용

☐ **회의결과 : 원안가결**

○ **참석위원 전원이 본 규칙개정 안건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하여 원안가결하는 데 동의함**

심의 결과 : 원안가결

2024년 9월 20일

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정 동 희 (직인)

김한솔/20241008154514

0677203764172836992

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

안건명 : 전력계통 운영방안 수립 근거 및 계통안정성 평가 검토기준 명확화를 위한 규칙개정(안)

4차(통합) 규칙개정위원회	제안번호 : 제2024-4-7호
개최일시	2024년 9월 20일 10:00
제 안 자	전력거래소
제안내용	1 **(운영방안 수립근거 명확화)** 전력계통 운영방안 수립 및 전력설비 신·증설·변경 등 사유 발생시 계통운영자의 운영방안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검토기준 및 근거 명확화 2 **(계통제약 고려사항 신설)** 발전제약 검토시 고려사항 및 기준조항 신설 3 **(운영방안 검증 강화)** 계통평가위원회를 통한 운영방안 검증 강화 4 **(신재생발전기 연계)** 신재생발전기 계통연계시 발전사업자의 계통영향평가 의뢰 규정 신설 5 **(안정성 평가항목 강화)** 컨버터 기반 전력설비 증가에 따른 불안정 방지를 위해 **전력계통 안정성 평가항목을 강화**하고 현행 **검토대상이지만 규정에 누락된 평가항목 추가** 6 **(기타)** 신뢰도 고시와 시장운영규칙간 정합성 확보 및 현장 업무와 정합성 제고
주요 토의내용	□ **회의결과 : 원안가결** ○ **참석위원 전원이 본 규칙개정 안건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하여 원안가결하는 데 동의함** – (권고사항) 계통평가위원회 보고를 통해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, 필요시 내용을 보완하여 전기위원회 상정할 것

심의 결과 : 원안가결

2024년 9월 20일

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정 동 희 (직인)

김한솔/20241008154514
0677203764172836992

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

안건명 : 재생에너지 예측발전량의 전력계통 활용성 증진을 위한 규칙개정(안)

<table>
<tr><td>4차(통합) 규칙개정위원회</td><td colspan="5">제안번호 : 제2024-4-8호</td></tr>
<tr><td>개최일시</td><td colspan="5">2024년 9월 20일 10:00</td></tr>
<tr><td>제 안 자</td><td colspan="5">전력거래소</td></tr>
<tr><td>제안내용</td><td colspan="5">
1 재생e 예측오차 축소를 위한 정산기준 강화
<table>
<tr><td>구분</td><td colspan="4">내용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적용단가</td><td>구분</td><td colspan="2">현행</td><td>개정(안)</td></tr>
<tr><td>오차율</td><td>6%이하</td><td>6%초과 ~ 8%이하</td><td>4%이하</td><td>4%초과 ~ 6%이하</td></tr>
<tr><td>정산단가</td><td>4원/kWh</td><td>3원/kWh</td><td>4원/kWh</td><td>3원/kWh</td></tr>
<tr><td colspan="4">※ 지급조건 : 설비이용률 10% 이상 시간대</td></tr>
<tr><td>적용대상</td><td colspan="4">· 태양광만으로 구성된 예측형집합전력자원 및 개별자원</td></tr>
</table>
2 재생e 예측발전량의 활용성 확대
○ 하루전발전계획 및 신뢰도발전계획 수립 시 예측발전량 활용 규정 명확화를 위해 문구 수정 및 조항 추가

3 (기타 개정사항) 제주 시범사업 운영에 따른 기준 변경, 문구 명확화 등
</td></tr>
<tr><td>주요
토의내용</td><td colspan="5">
□ 회의결과 : 심의보류

○ 참석위원 전원이 본 규칙개정 안건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하여 심의보류 하는 데 동의함
– (보류 사유) ①예측발전량의 하루전 발전계획 반영의 필요성과 ②제출 연속성 확보를 위해 등록시험 결과 통지 전 예측발전량을 제출·소급 정산하는 것의 타당성에 대해 제안자의 면밀한 추가 검토 필요
</td></tr>
</table>

심의 결과 : 심의보류

2024년 9월 20일

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정 동 희 (전원)

김한솔/20241008154514
0677203764172836992

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

안건명 : 중앙계약시장 제도 개선을 위한 규칙개정(안)

4차(통합) 규칙개정위원회	제안번호 : 제2024-4-9호
개최일시	2024년 9월 20일 10:00
제 안 자	전력거래소

제안내용

□ **중앙계약시장의 대상 전원 확대 및 계약구조 변경**

○ **(참여대상) 중앙계약시장 대상 전원은 중앙계약시장위원회에서 결정**

구 분	기 존	개 정
중앙계약 시장 정의	전력거래소가 저탄소 전원의 보급 확대 및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전력시장	전력거래소가 안정적인 전력수급 및 계통안정을 위한 공급능력, 보조서비스 등에 대한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전력시장
위원회 기능	<신설>	중앙계약시장 참여대상 전원 결정

○ **(계약구조)** 기존 **3자간 계약구조**에서 **2자간 계약구조로 변경**

- (기존) 낙찰사업자 ↔ 전력거래소 ↔ 전력구매자의 3자 계약구조

주체	낙찰사업자	전력거래소		전력구매자
역할	중앙계약 공급자	시장운영자	중앙당사자	중앙계약 수요자
역할 및 책임	계약물량 공급 급전지시 이행	시장개설	계약관리 정산·결제·지급	계약물량 구매 거래대금 지급
계약구조	3자간 계약			

- **(개정)** 낙찰사업자 ↔ 전력거래소 **2자 계약구조 및 역할·책임 변경**

주체	낙찰사업자	전력거래소			전력구매자
역할	중앙계약 공급자	시장운영자	중앙당사자	중앙계약 수요자	중앙계약 대금납부자
역할 및 책임	계약물량 공급 급전지시 이행	시장개설	계약관리 정산·결제·지급	계약물량 구매	거래대금 지급
계약구조	2자간 계약				X

주요 토의내용

□ **회의결과 : 원안가결**

○ **참석위원 전원이 본 규칙개정 안건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는 데 동의함**

심의 결과 : 원안가결

2024년 9월 20일

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정 동 희 (직인)

김한솔/20241008154514
06772037641728369926

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

안건명 : 준중앙급전발전기 운영 제도 도입을 위한 규칙개정(안)

4차(통합) 규칙개정위원회	제안번호 : 제2024-4-10호
개최일시	2024년 9월 20일 10:00
제 안 자	전력거래소

제안내용

□ 「준중앙급전발전기 운영 제도」 도입에 따른 규정 신설 및 개정

구 분		주요내용
18장	제1절 통칙	▪ 준중앙급전발전기 운영 관련 용어 정의
	제2절 참여 조건	▪ 준중앙급전발전기 제도 참여를 위한 등록, 성능, 정보제공 조건 명시
	제3절 준중앙급전발전기 운영	▪ 발전기 등록, 자원 구분, 운영기간 및 지역 구분 ▪ 자체발전계획량, 특성자료 등 제출 및 변경 절차 ▪ 준중앙급전발전기 자격 상실 조건
	제4절 등록시험	▪ 등록시험 검증항목, 절차,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
	제5절 급전지시	▪ 급전지시 세부항목, 지시 조건, 시간대별 이행률 측정 방법 ▪ 발전기 제어순위는 발전가격 및 계통상황 고려 ▪ 급전지시 미이행시 사유 및 시기를 전력거래소 통지
	제6절 정산	▪ 발전사업자 정산(발전량, 보조서비스, 기본정산금) ▪ 판매사업자, 직접구매자, 구역전기사업자 정산
부칙		▪ 전산시스템 개선까지 발전기 등록, 운영기간, 등록시험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등 수기 운영 ▪ 전압제어 및 주파수추종운전 관련 사항은 1년 이내 시행 단, 자동발전제어 등 기술개발이 장시간 소요되는 사항은 '25년 까지 계통위원회를 통해 별도 공지 ▪ 비수도권부터 준중앙급전발전기 운영 제도 시행 ▪ 유연성 단계적 완화('24 가을 70% 이하 → '25 봄 65% 이하 → '25 가을부터는 60% 이하 유지) ▪ '24 가을 통신장치는 최소 전력거래개시 월 말일까지 설치
별표1		▪ 준중앙급전발전기 관련 약어 및 변수명 신설
별표2		▪ 준중앙급전발전기 전력량 정산금*, 기본정산금 수식 * 기존 비중앙급전발전기와 동일 ▪ 직접구매자, 판매사업자, 구역전기사업자의 준중앙급전발전기 기본정산금에 대한 정산식 ▪ 준중앙급전발전기 보조서비스(1차주파수제어비스) 정산 추가
별표8		▪ 준중앙급전발전기에 대한 최대(최소)발전용량, 시간대별 급전지시량, 시간대별 이용률 및 급전지시 이행률 등 소수점 처리 기준 마련
별표 9		▪ 준중앙급전발전기 자체발전계획량을 신뢰도발전계획 조정시 활용 가능 ▪ 신뢰도발전계획 예비력 확보시 준중앙급전발전기 제어가능용량 활용 가능
별표13		▪ 준중앙급전발전기 신재생자료취득장치 또는 원격소장치 시설 대상 ▪ 준중앙급전발전기 급전전화 및 무선·유선전화 설치

주요 토의내용

□ 회의결과 : 원안가결

○ 참석위원 전원이 본 규칙개정 안건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는 데 동의함

심의 결과 : 원안가결

2024년 9월 20일

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정 동 희 (서명)

김한솔/20241008154514

0677203764172836992

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

안건명 : 비중앙급전발전기 자발적 유연성제공 서비스 도입을 위한 규칙개정(안)

4차(통합) 규칙개정위원회	제안번호 : 제2024-4-11호
개최일시	2024년 9월 20일 10:00
제 안 자	전력거래소
제안내용	□ **(제어 참여대상) "전력시장 참여 500kW 이상"** 비중앙급전발전기 □ **(시행절차)** ❶계약단가 기준 마련→❷모집공고→❸출력제어 참여자원 모집→❹확정된 발전기와 계약체결→❺시간대별 전력계통 · 수급여건에 따라 출력제어 시행→❻운영기간 종료 후 제어이행량 산정, 정산 □ **(활용방안) 계약발전기 대상 일별 · 시간대별 제어필요량 제어 시행** ㅇ **❶계약요금* 순**(보상수준 低 → 高, 경제성)을 **원칙**으로 하되, ❷제어 필요시점의 계통현황**, ❸기술능력 등을 고려하여 제어 시행 * 계약요금 : "SMP + REC(×가중치) - GP"(≒출력제어 이행 기회비용) 수준으로 산정 ** 효과적인 출력제어를 위해 제어권역을 수도권-비수도권으로 구분 □ **(정산방식)** 계약발전기별 **제어이행량을 계약요금 정산단가로 정산** ㅇ 모집공고 별 **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M+3개월 내 정산 및 결제** ㅇ 제어 **필요권역(수도권 - 비수도권) 구분,** 송전제약 사유 제어는 권역별 정산 □ **(비용분담) 제어사유 · 제어권역에 해당되는 비중앙급전 및 시장外 거래자원 등이 제어발생 시간대의 발전기별 개별 발전량에 비례하여 분담** ㅇ 경부하기 비중앙발전기의 발전량 과잉공급에 따른 출력제어 문제 해소비용은 全 **비중앙발전기(PPA 포함)간 형평성있게 분담*하는 원칙 적용** * **(중앙급전발전기 비용분담 미포함 사유)** 제어순서 상 **"중앙급전발전기 → 비중앙급전발전기 순"으로 제어**가 발생, **중앙급전발전기는** 발전기별로 가능한 "출력감발 및 정지" 등 **제어를 우선적으로 모두 이행한 상황**에서 계통 내 **공급과잉 미해소 등 "출력제어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"에만 비중앙 출력제어 발생**토록 계통운영 및 급전지시 원칙
주요 토의내용	□ **회의결과 : 심의보류** ㅇ **참석위원 전원이 본 규칙개정 안건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하여 심의보류 하는 데 동의함** – (보류 사유) 발전사업자의 이해도·수용성 제고 등을 위한 노력(출력제어 필요 사유 등 정보 공개, 사전 소통 강화 등)이 선행될 필요

심의 결과 : 심의보류

2024년 9월 20일

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정 동 희 (직인)

김한솔/20241008154514

0677203764172836992

【붙임 2】

일반의결·보고사항 결과

일 반 의 결 내 용	심 의 결 과
▪ **(제1호)** 규칙개정 실무협의회 위원 선임(안)	○ 원안 가결

보 고 내 용	보 고 결 과
▪ **(제1호)** 제24-긴급3차 규칙개정위원회 결과	○ 원안 접수

김한솔/20241008154514
06772037641728369926